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525885 판결 [구상금등 청구]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8. 11. 22.

판결 선고2018. 12.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9,128,266원 및 그 중 269,127,763원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7. 29. 접수 제690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C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사고 발생에 의한 대위 변제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2. 7. 10. 피고 A의 D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간 2012. 7. 10.부터 2013. 7. 9.까지, 신용보증원금 297,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의 요율은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2) 피고 A은 2012. 7. 1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같은 날 피고 A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기한 2013. 7. 9.으로 된 개별보증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서는 보증금액 266,000,000원, 보증기한은 2017. 7. 7.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3) D은 2017. 4. 20. 원고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C 휴·폐업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라 2017. 5. 31. D에게

269,193,749원(= 원금 266,000,000원 + 이자 3,193,749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A와 관련하여 65,986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고 이로 인해 확정손해금은 503원이 발생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A은 2016. 7. 28. 피고 A의 딸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7. 29. 접수 제6908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6. 7. 29. 지급하는 것으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A으로 된 F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으로 담보되는 피고 A의 채무는 피고 B가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피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의 어머니인 G의 D계좌로 2016. 3. 24. 6,000만원이 입금되었다. 피고 B는 2016. 7. 29.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B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 13, 14, 16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269,128,266원(= 대위변제금 269,193,749원 - 회수원금 65,986원 + 확정손해금 503원) 및 그 중 269,127,763원(= 대위변제금 269,193,749원 - 회수원금 65,98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8. 5.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7. 28. 후인 2017. 5. 31. 원고가 D에 대위변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7. 28.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서가 발행된 점, ② 2016. 3.경부터 피고 A이 운영하던 C는 자금조달이 필요할 정도로 신용이 악화되었던 점, ③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7. 28. 당시 위 C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④ 결국 위 C는 2017. 4. 20. 폐업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5. 31. D에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대위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성립되었지만, 그 당시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며, 그러한 이상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 스스로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그 이전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A이 C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이 기존 사업자금 조달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취지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고 A의 채무는 피고 B가 승계하기로 하였고, G의 D계좌로 2016. 3. 24. 6,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피고 B는 2016. 7. 29. 피고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기초사실에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 스스로 2016. 3.경부터 피고 A이

운영하던 C가 자금조달이 필요할 정도로 신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A과 피고 B는 부녀관계이고 다수의 금전 거래 내역이 있는바,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신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인 점, ② 피고 B는 G의 D계좌로 2016. 3. 24. 입금된 6,000만 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위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6. 3. 30. G의 돈 1,000만 원과 함께 G의 H 계좌로 이체되어 같은 날 I에 30,329,829원이 입금되었고, 4,000만 원은 2016. 6. 8. G의 돈 10,000,000원과 함께 G의 위 H 계좌로 이체되어 2016. 12. 7. 창구에서 출금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위 6,000만 원이 A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B는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2016. 7. 29. 피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000만 원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1,000만 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3,000만 원은 중 1,500만 원은 같은 날 다시 J에게 반환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A에게 매매대금 잔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 B는 2016. 3. 24.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 7. 28. 체결되었는데 그 이전인 2016. 3. 24.에 매매대금이 미리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 계약당일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반정모

판사김배현

판사차운제

별지